

소규모 합병 공고

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(이하 "당사")은 주식회사 오비엠랩과 2020년 2월 1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아 래-

1. 합병 당사회사

가. 존속회사: 당사

나. 소멸회사: 주식회사 오비엠랩(본점 소재지: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역로 155, 102호)

2. 합병 방법: 당사가 주식회사 오비엠랩을 흡수합병함

3. 합병 비율: 당사는 주식회사 오비엠랩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,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오비엠랩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합병비율은 1:0으로 함.

4. 합병기일: 2020년 4월 21일

5. 소규모 합병: 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.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가. 행사절차: 2020년 2월 14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
나. 제출기간: 2020년 2월 14일~2월 28일
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
1) 명부주주(특별계좌): 2020년 2월 28일까지 당사 금융팀에 제출(전화번호: 02-6924-6044)

2) 실질주주(일반계좌): 2020년 2월 25일(※명부주주보다 3영업일 전)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(단,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요망)
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.
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.

소규모 합병 반대이사표시 통지서

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 귀사와 주식회사 오비엠랩의 소규모 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주 주 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20년 []월 []일

성명:

주소:

주민등록번호:

2020년 2월 14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

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대표이사 차석용